

##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6-제30호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일자 : 2006. 6.15

제출자 : 사천시장

### 1. 의결주문

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 2. 제안이유

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“토지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정원”을 우리시 정원의 총수에 규정하며, 정·현원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일부 직렬을 조정하기 위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토지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정원 보강

- 6급 1명, 8급 2명

나. 직렬조정

- 기능직 정원의 일반직 전환
  - 기능직 3명(8급1, 9급 1, 10급 1)삭감 ⇒ 일반직 8급 3명 증원

다. 정원조정 내역

- 정원의 총수 : 853명 → 856명(3명 증)
- 집행기관의 정원 : 837명 → 840명(안 제2조제1호)

### 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#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
(제104회 - 총무위 부록)

나. 예산조치 : 소요경비 추계서 참조

다. 합 의 : 기획담당관실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2) 입법예고(2006. 4. 20~5. 10) 결과 제출된 의견없음

3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사천시 조례 호

##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853명”을 “856명”으로 하고, 동조 제1호중 “837명”을 “840명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정원관리기관별 · 직급별 정원표(제3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 회 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	면	동
총 합계	856	456	16	132	57	22	102	71
정무직 합계	1	1						
단체장(시장)	1	1						
일반직 합계	677	369	10	84	39	20	90	65
4급	6	3	1	2				
5급	45	18	2	6	5	1	7	6
6급	170	98	3	19	11	5	28	6
7급	217	116	1	35	10	6	21	28
8급	163	94	3	20	10	4	15	17
9급	76	40		2	3	4	19	8
별정직 합계	15	1		14				
6급상당	12	1		11				
7급상당	3			3				
지도직 합계	29			29				
지도관								
지도사	29			29				
기능직 합계	134	85	6	5	18	2	12	6
6급	5	4			1			
7급	14	12		1	1			
8급	24	18	2		3	1		
9급	51	33	4	4	4		6	
10급	40	18			9	1	6	6

#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	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853명</u> 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837명</u></p>	<p>제2조(-----) ----- -----<u>856명</u>-----, --- -----.</p> <p>1. ----- : <u>840명</u></p>	<p><b>별표중</b> 총합계 중 <u>총계 853, 본청 453</u></p> <p>일반직 합계중 <u>총계 671, 본청 364,</u> <u>사업소 38</u></p> <p>6급중 <u>총계 169, 본청 97</u></p> <p>8급중 <u>총계 158, 본청 90, 사업소 9</u></p> <p>기능직 합계중 <u>총계 137, 본청 87, 사업</u> <u>소 19</u></p> <p>8급중 <u>합계 25, 사업소 4</u></p> <p>9급중 <u>합계 52, 본청 34</u></p> <p>10급중 <u>합계 41, 본청 19</u></p>	<p><b>별표중</b> 총합계 중 <u>총계 856, 본청 456</u></p> <p>일반직 합계중 <u>총계 677, 본청 369,</u> <u>사업소 39</u></p> <p>6급중 <u>총계 170, 본청 98</u></p> <p>8급중 <u>총계 163, 본청 94, 사업소 10</u></p> <p>기능직 합계중 <u>총계 134, 본청 85, 사업</u> <u>소 18</u></p> <p>8급중 <u>합계 24, 사업소 3</u></p> <p>9급중 <u>합계 51, 본청 33</u></p> <p>10급중 <u>합계 40, 본청 18</u></p>		

## 정원 증원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서

□ 정 원 : 853명 → 856명(6급 1명 · 8급 2명 증원)

구분(예산과목)		소요비용	지 급 기 준	비 고
<b>총 계</b>		<b>123,215,300</b>		
인 건 비	소 계	108,784,360	· 직급별 2006 예산편성 기준에 의함	· 세부내역 -붙임참조
	기 본 급	59,953,200		
	수 당	19,929,380		
	정액급식비	4,680,000		
	교통보조비	4,440,000		
	명절휴가비	5,995,320		
	가계지원비	9,992,200		
	연가보상비	3,794,260		
물건비	기관운영추진비등		· 기관운영, 부서운영, 정원가산 직책급업무추진비 · 직급보조비, 특정수행활동비	
이전경비	연금부담금 등	14,430,940	· 성과상여금, 연금부담금, 연금지급금, 국민건강보험금	

## □ 세부내역

구분(예산과목)		소요비용(원)	산출근거(원)
총계		123,215,300	
○ 인건비		108,784,360	
- 기본급		59,953,200	(26,578,800×1명) + (16,687,200×2명)
- 수당	소계	19,929,380	
	정근수당	4,996,100	(2,214,900×1명) + (1,390,600×2명)
	정근수당가산금	2,760,000	(1,320,000×1명) + (720,000×2명)
	가족수당	2,520,000	(70,000×3명)×12월
	관리업무수당		
	초과근무수당	9,653,280	(3,701,280×1명) + (2,976,000×2명)
- 정액급식비		4,680,000	1,560,000원×3명
- 교통보조비		4,440,000	(1,560,000×1명) + (1,440,000×2명)
- 명절휴가비		5,995,320	(2,214,900×1명)×60%+(1,390,600×2명)×60%
- 가계지원비		9,992,200	(2,214,900×5회×1명)×40% +(1,390,600×5회×2명)×40%
- 연가보상비		3,794,260	(2,214,900×1/30×20일×1명) +(1,390,600×1/30×20일×2명)
○ 물건비			
- 기관운영업무추진비			
- 부서운영업무추진비			
- 정원가산업무추진비			
- 직책급업무추진비			
- 직급보조비			
- 특정업무수행활동비			
○ 이전경비		14,430,940	
- 성과상여금		3,000,000	1,000,000×3명
- 연금부담금		1,789,470	79,882,580×2.24%
- 국민건강보험		1,721,470	79,882,580×2.155%
- 연금지급금		7,920,000	2,600,000×3명

## 관 련 법 령 발 취

### 【지방자치법】

제103조 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 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관한규정

#### 제19조(한시정원) ① ~ ⑤ 생략

⑥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직급별 정원은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1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~5. (생략)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지방자치단체 토지관련 업무담당공무원 보강지침(행정자치부)

○ 사천시 정원보강

3명(6급 1명, 8급 2명) 보강